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

(제290회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제860호, 2022.3.24.) (정부11차 준용)

1. 성실등록 심사 및 처분기준

- 잘못 신고한 금액에 따른 심사 및 처분기준

등록사항의 심사	잘못 신고한 금액	처분기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법 제8조)	2천만원 미만	실무종결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보완명령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법 제8조의2)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경고 및 시정조치
	3억원 이상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과태료 부과
※ 비조회성 재산(사인간채권·채무, 현금, CD 등) 1억원 이상을 잘못 신고한 경우 ⇒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과태료 부과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이용, 직무 관련 뇌물 수수(收受),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직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을 통한 재산의 증식 의혹 ⇒ 법무부장관 조사의뢰
- 예금 항목은 순누락금액(| 누락·과소신고액 - 과다신고액 |) 기준 적용
- **허위의 자료 제출·거짓소명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하거나 심사에 응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이 확인된 경우 ⇒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과태료 부과** 신설(10차)

【 심사 시 고려사항 】

- 잘못 신고한 재산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8조제2항) ⇒ **보완명령**

- ① 재산항목은 신고하였으나 착오로 인하여 가액, 금액 단위, 면적·주소·지분 등 권리명세 오기
- ② 정보제공요청동의를 통해 받은 제공정보의 오류로 인하여 잘못 신고
예) 신고당시 제공받은 자료에는 없었던 계좌이나, 이후 금융기관이 위원회로 재회신하였을 때 포함되어 누락으로 인정된 경우
- ③ 재산등록방법을 착오하여 다른 항목이나 비고 등에 신고(기재)한 경우
예) 건물 소유권으로 신고하고 비고에 채무가 있음을 기재하였으나, 건물임대채무에서 신고를 누락한 경우
- ④ 재산등록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잘못 신고하였거나 법률상 신고대상이 아닌 재산을 잘못 신고
- ⑤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중 재산, 친목회비 등 재산의 잘못 신고
- ⑥ 배우자의 재산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잘못 신고한 경우
예) 배우자가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이혼소송 중으로 배우자 재산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단,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⑦ 구거, 도로, 농지 창고 등 재산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부동산의 잘못 신고
- ⑧ 신고대상 재산이 없는 직계존비속을 누락
- ⑨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재산 누락(동일 재산 1회에 한하며, 사인간채권·채무, 현금, CD 등 비조회성 재산은 적용 제외)** 신설(자체)
- ⑩ 기타 위 사항과 유사한 경우

※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재산은 잘못 신고한 처분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 가중·감경사항의 적용

- 가중·감경사항은 둘 이상이어도 한 단계만 적용
- **허위자료 제출, 거짓소명 등 불성실하게 재산 등록하거나 심사에 응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이 확인된 경우는 감경하지 않음** **신설(11차)**
- 가중·감경은 법 제8조의2 '경고 및 시정조치' 이상 처분에 대해서만 적용(보완명령 이하는 가중·감경하지 않음)

구분	가중사항	감경사항
최초 심사자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심사자 ※ (감경 제외) 잘못 신고한 재산 중 본인 재산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기 심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재산을 '변동 없음'으로 신고한 경우 • '보완명령'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가 보완하도록 통보받은 재산을 정정하지 않았거나 또다시 잘못 신고한 경우 신설(11차) • 최근 2년 이내 '경고 및 시정조치' 이상 처분이 있는 경우 • 계좌별, 항목별 1천만원 이상 재산을 20건 이상 잘못 신고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 실수·착오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신설(11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재산등록대상인 친족 사이에 발생한 채권·채무 중 착오·실수로 한쪽만 신고한 경우 ② 해지된 금원을 동일한 금융사에 재개설하여 해당 금원을 중복 또는 누락 신고한 경우 ③ 이혼 등의 사유로 다년간 연락이 두절되어 불가피하게 직계존비속의 재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어 부득이 잘못 신고한 경우 ④ 기타 위와 유사·상당한 정도의 단순 실수·착오에 해당된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감경제외) ①, ②, ④의 경우 잘못 신고한 재산 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잘못 신고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인정될 때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경 여부 결정(단, 과태료 이상의 처분에 한해 적용)

○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처분은 아래 기준으로 상정

구분	현직	퇴직	비고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 최종처분은 위원회에서 사안별로 판단
공직유관단체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신설(11차) /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정무직·선출직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2. 재산형성과정 심사 및 처분기준

○ 재산형성과정 소명요구 대상자 선정(영 제14조의2제1항)

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산증식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경우
3.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의 뚜렷한 증감이 있는 경우
5. 1~4에 상당하는 사유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소명요구를 의결한 경우

○ 재산형성과정 처분기준

재산형성과정의 심사결과	처분기준
사실과 다르게 잘못 신고한 재산이 있는 경우	성실등록 심사 및 처분기준에 따라 처리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관계기관에 타법 위반사항 통보
거짓소명, 거짓자료 제출,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u>해임</u> 또는 징계의결 요구, 과태료 부과 신설(10차)
부정한 재산의 증식 혐의가 상당히 의심되나 공직자윤리법상 확인 및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법무부장관 조사의뢰
<u>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u> 신설(10차)	<u>해임</u> 또는 징계의결 요구, <u>과태료 부과</u> 신설(10차)